

##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내역

계룡시 제2018-652호

###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계 룡 시 장

관 인 생 략
------------

의안 번호	의안 및 심의결과	비 고
1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여부의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함.</li> </ul>	
2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정수당 : 2019년도는 201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2% 인상하고, 2020~2022년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3만큼 인상</li> <li>• 의정활동비 : 1,320만원(전국 공통)</li> <li>•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li> </ul>	

#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심 의 안 건 : 1. 위원회 회의공개 여부의 件  
2.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件
- ◇ 심 의 일 시 : 2018. 11. 27.(화), 14:00 ~ 15:40
- ◇ 심 의 근 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 ◇ 참 석 위 원 : 9명(참석 9, 불참 1)
  - 참석위원 : 고영준, 김재범, 김종일, 김중식, 남상오, 송인석, 이정현, 최재협, 황근택
  - 불참위원 : 임미순

## 《 회의내용 》

### 【간 사】

- 그럼 지금부터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계룡시장) - 위원 위촉장 수여, 선서식 및 인사말씀 후 퇴실

- 지금부터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

- 다음은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의 중에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보안서약서」와 「확약서」에 서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 자리에 놓아드린 「보안서약서」와 「확약서」에 서명을 하신 후, 회의 종료 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 중 연장이신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셔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 【전체위원】

- 없습니다.

### 【간 사】

- 그럼 위원님들 중 제일 연장이신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 임시위원장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시위원장으로 이동)

### 【임시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간사로부터 소개받은 ○○○ 임시위원장 입니다.  
별도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지금부터 본 회의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어떠신지요?

### 【전체위원】

- 예.

### 【임시위원장】

- 그럼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후보가 한분이 추천 될 경우에는 참석자의 동의와 함께 위원님들의 박수로 선출을 확정하고 두분 이상이 추천 될 경우 거수하여 다수 득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전체위원】

- 예,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 이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중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

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임시위원장으로 앉아계신 ○○○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 다른 분들 더 추천해주세요.

**【전체위원】**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를 본 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전체위원】**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이 심의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위원장으로 선출된 ○○○입니다.

○ 본 의정비 심의회위원회는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4년 동안 매년 지급하여야 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위원회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 의정비는 해당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 책임감과 함께 많은 부담이 됩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 간사는 심의회위원회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참석대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 지금부터 제5대 계룡시 의정비심의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정비심의회위원회 구성 취지 및 위원회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는 오늘 부의할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오늘 심의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할 안건은 위원회 회의공개 여부의 件,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件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위원회 회의공개 여부의 件,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件 등 2건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방법은 1건 심의, 1건 의결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체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의안번호 제1호』 본 위원회의 회의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간사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의안번호 제1호,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여부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9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나,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2/3 이상이 찬성하실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간사가 했는데, 이 회의장소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지요?

○ 이미 공개한 회의나 회의록은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나 기사화 되는 것은 공개되는 거지요?

**【간 사】**

○ 예. 홈페이지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걸 공개 안하려면 2/3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없고 한테 특별히 공개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 비공개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있으신가요?

**【전체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공개하는데 찬성하시는 거죠?

**【전체위원】**

○ 예.

**【위원장】**

○ 그럼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회의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2호』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의안번호 제2호,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의 件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은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 핵심 안건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출범한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2019년부터 4년 동안 매년 지급해야 할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에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자유토론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 지금 **2.6%**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로 인상하려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회의가 **2,3**차로 진행이 됩니다. 별첨 자료를 보면 청양군은 내년엔 **13%**인상을 하려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필요하여 **2,3**차로 회의가 진행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전결로 되었습니다.
- 우선 **2.6%** 이상으로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여부를 토의하고, 인상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 주민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자유토론을 먼저 할까요?
- 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제가 심의를 몇 번 해봤는데, 다수가 타 시군에 맞춰서 크게 무리가 없었고, 일부에서는 동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타 시군과 맞춰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맞춰서 가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 월정수당 고려 시 고려사항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주민수가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늘었고, 타시군 대비 몇 명이 늘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을 하는지 비교분석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구요. 의정활동실적은 과거 의원들의 실적인데, 지난번에 마스크를 보니까 한건도 발의안하고 4년 동안 의정비를 수령하고, 열심히 일한 의원과 놀기 만한 의원이 동일하게 의정비를 받는 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의회자료를 여기에 검토사항으로 넣은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며, 2년 단위로 성과분석을 해서 실적에 따른 차등을 주는 의정비 지급방법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자료 검토와 타 시군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타 시군에 발맞춰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자료를 보니 2009년 초창기 때, 계룡시의 월정수당을 보면 도내 14위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서 인근 논산, 부여, 예산 등 보다 많이 의정비가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열악한 환경을 기준에 비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접근성이 타 지자체의 경우엔 의회를 한번 출근하는 경우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교통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 계룡시는 거리가 매우 가깝고, 의원 분들 중에 예비역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 생활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계룡시의 재정여건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 동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자료를 보았을 때 계룡시가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능력도 중간 정도이고, 2018년도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더라도 몇몇 시군을 제외하곤 공무원보수인상률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아, 지금 현재 5대 의원님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사항이기에 아직 실적 등 결과로 나온게 없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았을 때 2.6%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현재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계룡시 여건을 보면 동결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해봤을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별도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수당을 받나요?

**【간사】**

○ 따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의장업무추진비나 그런 것 있지 않나요?

**【○○○ 위원】**

○ 업무추진비 말구요. 지금처럼 특별위원회나 감사를 하자나요. 위원장에게 별도 수당 지급하나요?

**【간사】**

○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가 별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우리시 의정비는 공무원 몇 급 정도 수준이 되나요?

**【간사】**

○ 대략 7급 10호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 입장에서는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의원들 수당이 적절한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가면 의원님이건 공무원이건 시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차 토론합니다. 인상·동결·감액 중에서 대부분 인상과 동결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상하는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이면 주민의견수렴 생략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인상 시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6% 이상 인상을 바라시는 위원님들이 7명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2차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2.6% 내에서 인상률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이상 인상을 요구하시는 의원님 한 분이 있는데 이외에 더 있으신가요?

**【전체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2.6% 이하에서 결정하는데. 의정비 심의책자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자료의 여러 고려요소를 보았을 때 2.6%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 드린 게 이것이고.  
○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5개 시·군 중 13위입니다. 천안이 가장 많고, 청양이 가장 적습니다. 인구부분에서도 크게 의원님들이 부담스러운 사항이 아니구요. 면적도 논산의 1/10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위인데 이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고려할 것이냐는 고민이 생깁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천안시는 1조2천7백억원인데 반해 계룡시는 1천3백3십억원입니다. 논산도 우리의 3~4배정도가 되는데 우리보다 월정수당은 적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지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계룡시가 2009~2011년, 2012~2015년 의정비가 동결되었고, 2016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데도 2014년도 이전에는 거의 같이 동결로 따라갔습니다. 2015년도부터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등이 동결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이걸 참고요소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

○ 그동안 월정수당 상승세로 보면 계룡시가 가파르게 올랐네요.

**【위원장】**

○ 예. 그래서 제가 또 분석 해본 것으로 2009~2011년까지 동결했어요.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그 다음해에는 동결했다가

2012년도부터는 인상을 합니다. 2015년까지 동결로 가다가 이때 시의원이 바뀌니까 2016년도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 이내에서 올리는 데에 있어 2.6%를 최대치로 적용하여 인상을 할지 아니면 2.6% 이내에서 어느 정도 인상할지와 2020~2022년 의정비 결정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여 2차 토의를 곧바로 할지 아니면 안을 3가지 정도 제시하면 그것으로 토의를 할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2.6% 이하에서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는 위원장께서 깊게 분석을 해보셨으니 안을 제시해주시는 것이...

**【위원장】**

- 그럼 2차 토의를 통해 자유의견 개진을 해보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 드렸으니 의견을 듣고 제가 생각한 안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럼 2020~2022년도도 2.6%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건가요?

**【위원장】**

- 아닙니다. 해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변동되고 그 변동된 인상률이 적용이 됩니다. 감액에 대해선 의견이 없으셔서 동결부터 2.6%까지 범위 내 얼마만큼을 할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의견수렴하자는 것은 10년 정도 되었으니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자료검토와 아까 질문했던 의회 위원장 수당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본결과 2.6%의 1/2정도로 결정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내년에는 동결하고, 그 다음해부터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하여 인상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

- 2019년 2.6% 인상 및 2020~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

- 저는 동결을 하고, 공무원보수인상률의 절반정도 인상하는 쪽을 생각합니다. 인상을 하다보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위해 일한다기보단 시민을 위해 나오신 것이고, 의원분들 생활여건도 어려운 분들도 없으시고 계룡시 어려운 예산 실정을 보았을 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결정된 사항을 들어본 결과, 거의 다 2.6% 공무원보수인상률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무원보수인상률은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없더라구요. 물가상승률을 알아보니 1.3%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합산해서 나눠보니 2%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 계룡시의 제반여건이나 의원들의 활동상,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특위 구성 시 위원장에게 식사비를 줘서 의회 활동 중에 식사도 할 수 있는 여건, 계룡시가 4개 면·동이기에 좁아서 걸어도 40분이면 갈 수 있는 정도로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지금까지 의회수당이나 특위수당 등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사실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고려 해 보더라도 오너는 죽습니다. 여건 오너가 죽는게 아니라 시민이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정도 인상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되나 봤더니 45,900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요. 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보면 2.6%는 적용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올해 물가상승률이 1.3~1.5%정도 되더라구요.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2%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게 또 줄이면 사기도 떨어지구요. 그렇다고 2% 올린다고해서 예산이 과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올려서 사기진작도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자 그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게 돼있죠? 의원은 겸직을 할 수 가 있어요. 의원이 직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연금문제 이야기가 나오신거고. 박근혜 정부부터해서 공무원연금은 5년 동결이 됐어요. 군인연금은 아직은 개정이 안돼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상률이 국민연금과 똑같은데, 국민연금을 지금 어떻게 하나면. 지금 위원님들 중에 아파트 동대표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2월 달이 되면 직원들(경비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강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왜냐면 주민들을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경비원분들 봉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죠. 연금산정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엔 현직이 나가면 그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따라갔어요. 내가 20년을 했다면 50% 수준을 따라갔는데. 1999년도부터 그게 안 되고 연금을 분리하게 되서 2001년도쯤엔 현직하고 퇴직자하고 약 17%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비례해서 따라 가는게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적용하다보니까. 2000년도에 원복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서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고 공무원보수는 동결을

하다 보니 이게 17% 차이가 나다보니, 그러면 안 된다 해서 2% 이상 차이가나지 않게 제도를 만들었다가 최근엔 3%까지 차이 나서, 그래서 주는게 국민연금도 그렇게 되요. 국민연금이 올해 1.9% 올랐어요. 작년도에 1%, 재작년도 0.7% 올랐구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2015년도에 3.8% 늘어날 때 국민연금은 1.3%, 2016년도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이 3% 오를 때, 국민연금이 0.7%, 작년에 3.5% 오를 때 국민연금이 1% 올라가지고, 많은 시민들은 국민연금은 안 올라가는데 공무원들만 잘산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요.

- 우리가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보자면,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하면 2.6% 연간 55만원 가량이고, 국민연금수준 1.9%으로 하면 40만원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려한대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이 4% 된다면 의정비도 그대로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안내 자료에 예시처럼 1/3이냐 1/2이냐 하다보면 타 시군과 형평이 안 맞을 수 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것을 정할 때 1안은 2.6% 다 올리자는 안, 2안은 국민연금 올라간 1.9% 정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1안과 2안 평균을 내면 2.25%가 되요. 48만원 가량 되는데 결국은 연간 1인당 8만원 정도를 더주냐 마느냐 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2%인상 의견이 반 정도 되고, 의결이 되려면 위원 분들 중 7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3명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의결이 안 됩니다.

**【○○○ 위원】**

-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동결, 2%, 2.6% 3안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전체위원】**

- 거수로 하지요.



**【위원장】**

- 자 그럼 2.6% 찬성 하시는분? 2명이구요.
- 동결? 2명
- 2%? 4명
- 그럼 2% 인상으로 찬반투표를 할까요?

**【전체위원】**

- 네 그러시죠.

**【위원장】**

- 그럼 일단 내년도 2% 인상에 대해 찬반을 묻겠습니다.
- 반대 2명, 찬성은 7명으로 2% 인상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 2020년도부터 나머지 3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의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인상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인상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그대로 적용 인상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1/2 적용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그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1/2 적용 희망합니다.

**【○○○ 위원】**

-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으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1/2 적용 의견입니다.

**【위원장】**

- 우선 1/2인상 찬성하시는분? 5명
- 반대하시는분? 3명
- 5대3으로 반대가 3명이상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 적용과 100%적용 사이에 2/3도 가능한가요?

**【간 사】**

-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의견을 위원님 중에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주세요.

**【○○○ 위원】**

-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서 4%가 될지 5%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 정도면 앞으로 현재 기준으로해서도 큰 무리가 없고, 향후에 4~5%가 되도 2% 이상 정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1/2이 제 생각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잠시 정회 후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

**【위원장】**

- 자 그러면 2/3 찬성이 않나왔으니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할까요? 의견개진하시기 어려우시면?

**【전체위원】**

- 거수로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 2020~2022년도를 공무원보수인상률 2/3만큼 반영하여 합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1명 반대, 8명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2% 인상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며,
  -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3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의 2/3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의 2/3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의사봉 3타)

-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